

건설기술인 권리현장 제정의 의의



오치돈 연구원 건설과 사람 미래전략연구팀 책임연구원, chidon@chri.re.kr

KICEM

1. 들어가며

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성장을 시작한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국가 경제가 성장하는데 중요한 바탕이 되었으며,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불어닥친 각종 경제적 위기에 불구하고 해외건설 수주, 인프라 투자 등으로 이를 극복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저성장 국면과 맞물려, 국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로 인하여 건설산업의 이미지는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가뜰이나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열악한 처우로 인하여 청년층 인력의 유입은 날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가장 최근에는 공공·민간부문의 구분 없이 발주자, 사용자 등에 의한 이른바 갑질사건이 이슈화 되면서 건설산업과 건설기술인의 이미지는 악화일로(惡化一途)를 걷는 모습이다. 특히, 건설생산체계의 특징 중에 하나인 수직적 갑-을 관계는 건설기술인의 기술과 권리가 침해받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2017년 5월 31일 건설기술인이 존중·우대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건설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본 개정법률안은 2018년 8월 14일 최종적으로 통과되어 2018년 12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본 고는 시행을 앞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근거로 제정된 [건설기술인 권리현장] 내용과 그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건설산업과 건설기술인의 현재

(1) 긍정적·부정적 이미지

2013년 전체 건설기술인의 40% 이상을 차지하였던 30대의 수가 2017년 28%로 감소하였고, 50대 이상 건설기술인은 24%에서 34%로 1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사이 건설기술인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이다. 젊은 인력 유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건설산업이 갖는 여러 가지 고질적인 부정적 이미지 때문이다. 실제로 건설산업의 이미지는 타 산업에 비해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기도 하였는데, 특히, 일반인이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스스로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인에게 건설산업은 몇몇 긍정적 이미지가 작용한 탓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전문가로서 인간과 가장 밀접한 분야를 다루고 있는 건설기술인이 자신이 속한 산업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건설산업과 관련한 모든 이들이 한 번 곱씹어 봐야 할 문제인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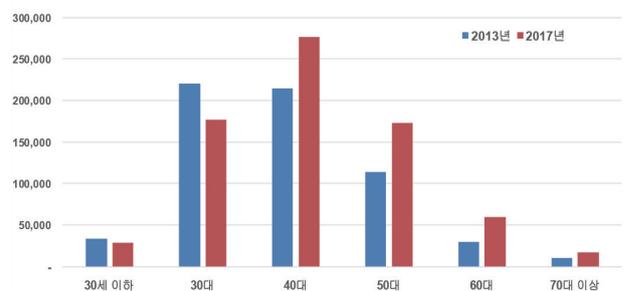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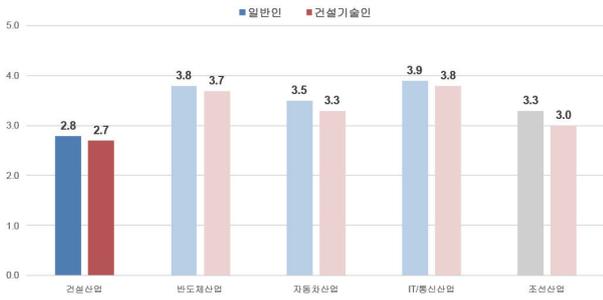


그림 1. 연령대별 건설기술인 수의 변화(2013년 vs. 2017년)



*자료: 한국건설기술인협회(2015), 건설기술인의 신성장 전략과 역량강화 방안 연구

그림 2. 건설산업과 타산업에 대한 일반인과 건설기술인의 이미지

일반인이 건설산업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를 살펴보면¹⁾, 주택공급, 일자리 창출, 주거환경개선 및 사회기반시설 구축 등 사회적 기여와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이미지가 강한 반면, 열악한 근무환경, 부실시공, 안전사고, 부정·부패 등 근로환경 및 업무수행과 연관된 것은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부정·부패에 대한 이미지는 세계적 수준의 기술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나라 건설산업과 건설기술인에게는 다소 아쉬운 부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건설기술인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이미지를 보면, 「전문적이다.」 「정신력과 체력이 좋다.」 「근면성실하다」 등 개인적 성향과 관련된 이미지가 많은 반면, 부정적 이미지는 「위험한 일을 한다.」 「어려운 일을 한다.」 「근무시간이 길고 여가시간이 적다.」 등 근로환경과 연관된 이미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건설산업과 건설기술인이 국가와 사회에 매우 크게 기여 하고 있지만, 그것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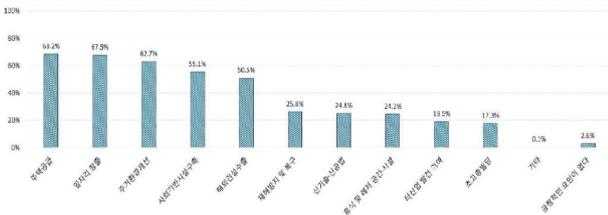


그림 3. 일반인이 인식하는 '건설산업'의 긍정적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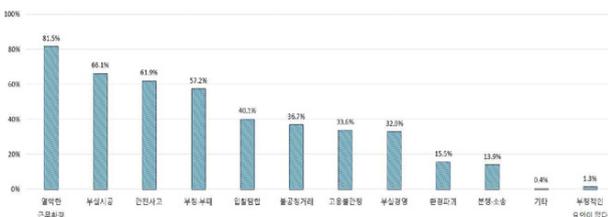


그림 4. 일반인이 인식하는 '건설산업'의 부정적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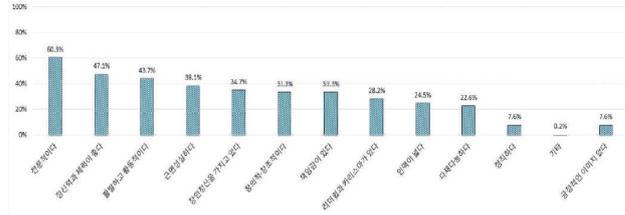


그림 5. 일반인이 인식하는 '건설기술인'의 긍정적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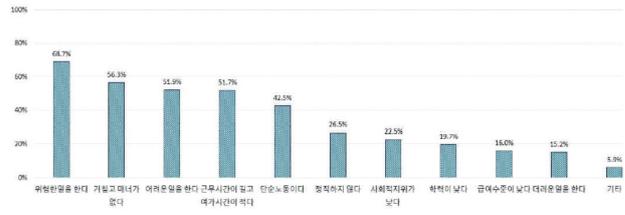


그림 6. 일반인이 인식하는 '건설기술인'의 부정적 이미지

(2) 우리나라 근로자의 권리 수준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은 매년 제도, 인프라, ICT 보급, 거시경제 안정성 등 기본요인과 보건, 기술 등의 인적 자원 부문, 생산물 시장, 노동시장, 금융시스템, 시장 규모 등 시장부문, 그리고 기업 활력, 혁신역량 등의 혁신 생태계 등 4개 부문 12개의 분야에 대해 통계자료 및 설문조사를 통해 세부적인 순위와 전체 국가 경쟁력 순위를 매긴다. 얼마 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8 국가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 140개 나라 중 15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2017년 26위에서 무려 11단계가 상승한 결과로서, 매우 놀라서 수치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ICT)의 보급(ICT adoption)과 거시 경제 안정성(Macro-economic stability)이 1위를 차지하였으며, 인프라(Infrastructure)가 6위, 그리고 혁신역량(Innovation capability)이 8위로 상위 순위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작 다른 지표이다. 하위권 순위를 기록한 지표는 생산물 시장과 노동시장이다. 생산물 시장(Product market)은 67위, 노동시장(Labour market)은 48위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시장의 세부 지표를 확인해 보면, 정리하고 비용(Redundancy costs)이 114위, 노사관계 협력(Cooperation in Labour-Employer relations)이 124위, 그리고 근로자의 권리(Workers' rights)가 108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대립적인 관계와 낮은 근로자의 권리 등이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끌어 내린 것이다.

1) 일반인이 인식하는 건설산업과 건설기술인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이미지 관련 자료는 2015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수행한 '건설기술인의 신성장 전략과 역량강화 방안 연구'에 수록된 자료를 활용하였음.



*자료: World Economic Forum(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8

그림 7.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순위(2018년)

Item	Score	Change	Rank	Country
Pillar 8: Labour market 0-100 (best)	-	62.4 ↑	48	United States
8.01 Redundancy costs weeks of salary	27.4	51.3 =	114	Multiple (8)
8.02 Hiring and firing practices 1-7 (best)	3.7	44.2 ↑	87	Hong Kong SAR
8.03 Cooperation in Labour-employer relations 1-7 (best)	3.6	43.5 ↑	124	Switzerland
8.04 Flexibility of wage determination 1-7 (best)	5.0	66.1 ↓	63	Hong Kong SAR
8.05 Active Labour policies 1-7 (best)	4.5	58.0 ↑	30	Switzerland
8.06 Workers' rights 0-100 (best)	58.8	58.8 ↑	108	Multiple (4)
8.07 Ease of hiring foreign labour 1-7 (best)	3.7	45.2 ↑	104	Albania
8.08 Internal Labour mobility 1-7 (best)	4.4	56.7 ↓	75	Guinea
8.09 Reliance on professional management 1-7 (best)	4.4	55.9 ↓	61	Finland
8.10 Pay and productivity 1-7 (best)	4.8	63.4 ↓	16	United States
8.11 Female participation in Labour force ratio	0.81	75.7 ↓	53	Multiple (4)
8.12 Labour tax rate %	13.5	92.4 ↑	56	Multiple (26)

*자료: World Economic Forum(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8

그림 8. 우리나라 노동시장(Labour market)의 세부항목별 국가경쟁력 순위

3. 건설기술인 권리현장

(1) 추진과정

앞서 서술한 우리나라 노동시장 평가지표 중 하나인 '근로자의 권리가 100위권 밖을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건설산업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인 다단계 생산체계는 자연스럽게 사업참여자들의 수직적 관계로 이어지게 되며, 이로 인하여 건설기술인은 전문적 기술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기술과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우리는 언론보도를 통해 심심치 않게 접하기도

한다. '건설기술인 권리현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건설기술인 권리현장' 제정과 관련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김현아 국회의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에서 시작하였다. 이후 법제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고 몇 차례의 과정을 거쳐 2017년 5월 31일 김현아 의원이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여 권리현장 제정의 근거를 마련코자 하였다. 이후 2018년 8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18년 12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표 1, 참조)

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

제22조의2(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 등) ① 건설기술인은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공사관리 등과 관련한 요구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 또는 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한 사항을 건설기술인에게 요구해서는 아니 되며, 건설기술인은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유를 밝히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 또는 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그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단체는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권리·의무 등 기본적인 사항을 건설기술인권리헌장으로 제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2) 주요내용

‘건설기술인 권리헌장’은 연구원 「건설과 사람」이 초안을 작성하였고, 김현아 의원을 비롯하여 건설분야의 전문가 자문과 80만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어 2018년 10월 5일 공표하였다.

‘건설기술인 권리헌장’은 크게 전문과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의 내용은 권리헌장 제정의 근거와 목적을 간략히 서술하고, ‘건설기술인 권리헌장’이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 제1조(목적)에 명시된 안전에 대한 확보 및 공공복리의 증진과 경제발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본문은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호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와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것이다. 제2호는 모든 건설기술인이 최근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와 관련한 근로시간, 그리고 임금 등 다양한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과 관련하여 정규직/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없이 합리적으로 대우받을 권리를 명시한 것이다. 제3호는 건설기술인이 직업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인 자기개발 및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

해야 할 의무를 명시한 것으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건설기술자의 육성)에 명시된 교육훈련을 지원받을 권리에 관한 내용을 통합하여 서술한 것이다. 제4호는 부실시공 예방과 관련된 것으로서 최고의 품질과 성능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본연의 의무를 명시한 것이다. 제5호는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가장 밀접한 건설기술인이 책임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각종 입·낙찰 비리와 같은 부정·부패 척결 등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의식을 가질 의무를 명시한 것이며, 제6호는 건설기술인이 부정적 이미지 탈피를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의 가치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명시한 것이다.

4. 맺음말

‘건설기술인 권리헌장’은 타 권리헌장과 다르게 건설기술인에게 주어지는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건설산업은 과거 많은 대형참사의 중심에 있었다. 그러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하여 건설산업과 건설기술인의 이미지는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부정적으로 각인되어 있다. 권리헌장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에 관한 항목을 포함한 것은 건설기술인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과거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비록 ‘건설기술인 권리헌장’은 법적 효력을 갖거나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강제적 성격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건설기술인이 자신을 돌아보고 맡은 소임과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등 각인된 부정적 이미지를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건설기술인 권리헌장’은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 속에서 더 큰 자부심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건설기술인들이 전문가적 양심에 따라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그 노력에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초석이 되리라 믿는다.

「건설기술인 권리헌장」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건설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건설기술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건설기술인이 사회적 사명을 다하여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하나,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와 사용자의 위협하거나 각종 기준·표준에 어긋나는 요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하나, 건설기술인은 근무시간과 보수, 근무환경 등에 대해 전문가로서 차별 없는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하나, 건설기술인은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며, 정부와 사용자로부터 이에 대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나, 건설기술인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최상의 품질과 성능이 확보된 안전한 시설물을 건설한다.

하나, 건설기술인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문화 창달에 앞장서는 등 스스로의 위상을 제고한다.

하나, 건설기술인은 사회적·경제적 영향력과 지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건설산업의 올바른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그림 9. 건설기술인 권리헌장